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2. 14(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충식 부위원장 (1인)

---

##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도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은 총 3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제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5차 서면회의 회의록, 그리고 제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이경제 위원장

- 제5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하여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4-7-36~38)

###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제46차 위원회 지난 12월 27일을 통해 SKT, KT, LGU+의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였으나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의 조사배경과 주요경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차 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면 2014년 1월 3일 이통3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한바 있고, 1월 10일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즉시중지 및 지속시 제재할 것을 “경고”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월 27일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바 있고, 1월 29일~2월 10일까지 시정명령 불이행 관련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이행여부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사내용은 이통3사 대리점

(SKT: 12개, KT: 7개, LGU+: 5개)에서 체결된 신규 및 기변가입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고, 이통3사가 각 사의 대리점 등에 배포한 정책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은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용자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총 21,688건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통3사가 단말기 리베이트 정책을 수시로 추가하여 대리점에 배포·전파하는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조치(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재할 예정입니다. 금번 위원회 안전과 관련해서 피심인은 이번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도의 출석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일일이 조사했다기보다는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적발해 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렇게 했었던 사례가 전에도 있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2004년과 2006년(2002년과 2004년'으로 정정)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우리가 지금 1차로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조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또 혼탁해지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이 빨리 제정되어서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 처분 내용을 미래부 장관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래부에 일임해야 할 내용이겠습니까만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제재해 왔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할지 우리가 논의해서 미래부 쪽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 왔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04년과 2006년은 2002년과 2004년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2002년과 2004년에 이런 시정명령 위반 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린바 있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간은, 그때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있어서 한 번은 30일, 20일, 한 번은 40일, 30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것이 2004년과...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2002년과 2004년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2002년과 2004년에, 30일·20일, 40일·30일...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영업정지 내릴 때 며칠 내렸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때는 24일, 22일, 20일 3사 달리..., 그때는 위반율에 따라서 3사에 이틀씩 차이를 두고 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때 이야기할 때 “앞으로 계속 위반이 되면 더 가중처벌하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김대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현재 차별적 시정명령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

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적 시정명령을 못 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1월 27일에 조사를 시작할 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반사례를 잡는 것과 그다음에 과거처럼 일정기간을 조사해서 주도적 사업자를 별하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위반사례를 잡기 위한 것은 3사의 대리점과 가입자 규모 등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단 위반사건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만 잡아왔기 때문에 위반율이라는 것을 고려하기가, 어떤 회사는 많은 곳의 대리점에서 저희가 위반 건을 가져오게 되고, 어떤 회사는 또 위반율이 적은 데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또 위반건수를 잡기 위해 이틀 만에 바로 이 안건을 만들어서 사업자와 의견조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율 차이에 따라서 차등 제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처음에 조사 목적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만 봤다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2002년, 2004년에도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 조사했을 텐데 그때는 차별적 징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지난 1월에 영업정지를 할 때 24일, 22일, 20일을 한 이유는 위반율에 따라서 이틀씩 차이를 뒀고, 2002년과 2004년에 차등한 것은 그때 당시에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10일씩 차이를 뒀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재작년 건은 시장조사 결과의 문제였고, 2002년, 2004년은 지배적 사업...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서...

○ **양문석 상임위원**

- 가중처벌 근거가 있었고...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브리핑할 때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자 브리핑할 때 설명하고, 그러면 지금 시장조사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은 시장 위반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잡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는 현재 '2.11대란', 참 부끄럽게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저항도 아니고 반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력화 기도가 지금 통신3사로부터 계속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시정명령과 관련된 입장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정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난 6년 동안 최대 영업정지기간이 24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일, 22일, 24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KT, SKT, LGU+ 순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명령은 하지 말라고, 계속 시정하라는 명령이었고, 시정명령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정명령 정도는 어겨도 대충 넘어가는 이러한 업계의 인식을 이번에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미래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정해 주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떠넘기느냐는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미래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징계 상황까지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그쪽에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순차적 영업정지 영역에 있어서 24일이 최고였으면 이번에는 최소한 30일 이상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시정명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반항행위를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럴수록 이용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이 이야기, 이용자 차별에 대한 문제는 내 주머니로, 그리고 정보 느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보 빠른 한 사람을 위해서 부조하는, 자의에 의한 부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부조하는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 것이 보조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치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정지 영역도 예전에는 하나만 잡고 2개는 풀어놓았는데 2개를 교집합을 만들어서 2개를 동시에 잡아놓고 1개만 영업하면서 실질적인 영업정지 효과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다음 예전

에 영업정지의 개념을 상당히 축소해서 신규 단말기 정도로 문제를 정리했는데 영업정지는 말 그대로 전면적인 영업정지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업자들의 힘겨루기에서, 이것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라는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이번에는 이통3사의 이 대란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간은요? 30일 이상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과거 시정명령 위반사례를 보면 30일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언론들도 우리를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짬짜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판들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입장들을 바라봐야 하고,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각오로 대응해야 하고, 3월 주도적 사업자 문제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고, 미래부 장관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의지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리고 우선 통계를 잠깐만 봅시다. SKT, KT, LGU+해서 위반 이용자 차별 사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보면 5:3:2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를 보면 20%밖에 안 되는, LGU+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런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냐, 또 그런가 하면 밑에 기기변경의 경우 KT나 LGU+는 1,000건 정도인데 SKT가 4,000건이 넘는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위반사례를 잡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 사의 1개 대리점에 가서 위반사례를 잡아왔는데 우연히도 어떤 회사가 위반사례가 많은 대리점이 걸리게 되면 표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을 조사할 때는 가입자 등을 고려해서 대리점을 선택하는데...

○ **홍성규 상임위원**

-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갑자기 가서 하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지금 말한 식으로 보지 말고,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통계치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온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는 전화기를 이동사에서 파느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텔레비전을 방송사에서 안 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화기를 이동사에서 파는 데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은 아마...

○ **홍성규 상임위원**

-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샀을 때, 제 기억에 내가 사 가지고 가서 등록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도 일견 수공이 갑니다만 제도를 이렇게 해 놓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SKT, KT, LGU+ 이런 사업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제도개선을 안 한 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왜 무슨 이유로 다른 데는 잘하지도 않고, 또 국내 다른 산업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동전화만 왜 통신사에서 파느냐, 그리고 우리가 요금표를 받아보지만 최근에 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단말기 요금, 서비스 요금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바람에 요즘은 요금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내 핸드폰요금에 단말기 요금은 얼마이고, 서비스 요금은 얼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는 요금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모였는데도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하나한 제도다, 방법은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팔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금인

가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국회에서는 단통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는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것만 만날 바라보면서 사업자들만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왜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을 바꾸든 아니면 제도를 우리 내에서 바꾸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은 제재를 강하게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에 관한 우리 논의사항을 미래부에 전달하면서 저는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마침 이것이 미래부에 그런 업무가 가 있기는 합니다만 방통위와 미래부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구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것들을 미래부에도 이야기 하고, 또 공동으로 같이 논의해서 연구반을 구성해서 꼭 법 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해서 사업자들에게만 다 떠넘기지 말고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홍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단말기 유통법 논의 가운데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현재 결합판매 하는 것이 세계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적용된 것이냐, 세계에서 이렇게 결합해서 판매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언론들이 집필자들을 고의적으로 등장시켜서 잇따라..., 저는 세 번째 봤습니다. 단말기 유통 규제는 과연 소비자에게 유익한 것인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뜻으로 된 칼럼을 연달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박문이 곧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통 자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규제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문제를 삼아가는 것이 본질을 전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단말기 유통법도 있고, 또 오늘 미래부에서 요금을 자율화하겠다, 이것이 확정된 것인지 익명성으로 보도가 되어서 애드벌룬(ad balloon)을 띄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제도 자체가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서 논리적 이유는 있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은 우리가 적발해서 미래부에서 판결을 내려라하고 그쪽으로 떠넘기고, 다른 때는 우리가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체계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래부에 갔을 때 미래부로서도 사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그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데 떠넘기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심의할 때 방송심의는 정부기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무게에 따라서 경고다, 또는 징계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요. 하여튼 논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나, 법령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적으로 불비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하여튼 심의하다 보면 제가 상식으로..., 제가 양쪽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눈에 거슬려서 이야기 하다 보면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잘못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법령정비와 관련된 작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희 위원님!

○ **김대희 상임위원**

- 한 가지 더 발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업자 영업정지를 할 때 한 사업자씩 돌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두 사업자씩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부에서 양형할 때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신규 모집 플러스알파를 하자는 제안도 좀 더 강력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진짜 당혹스러운 것이 김대희 위원님 상임위원 되시고 나서 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 **홍성규 상임위원**

- 오늘은 양 위원님이 말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시면 언제든지 동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이경재 위원장**

- 이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0분 폐회 】